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기준
1. 자본금		1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다. 줄자(5m, 50m)	각 1개 이상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